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. 3. 7 선고 2022가단211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2. 7.

판 결 선 고 2023. 3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
{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(2021. 4. 6.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적용되고,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24%이므로, 이 사건 대여금 및 약정이자에 관한 연 24%의 지연손해금율은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.}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)

판사 조혜수

별지